

2024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 **교육정보** → 전편입학안내



2024. 1.

서울특별시교육청

【총 무 과】

차 례

I. 목 적	01
II. 기본 방침	01
III.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	02
1. 대상자	02
2.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기	05
3. 배정방법 및 정원	06
4. 등록 기한	08
5. 전·편입학 처리 절차	09
6. 유의 사항	09
7. 구비 서류	14
IV. 진로변경 전입학(일반고 ↔ 특성화고)	20
V. 가정폭력·이동학대·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학교장 선발교)	22
VI. 일반고등학교 외 다른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	23
1.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편입학	23
2. 예술·체육, 과학, 교과 중점학교로의 전·편입학	23
3. 특목고, 영광고(관악예술과)로의 전·편입학	24
4. 서울 소재 학력인정 대안학교로의 전·편입학	24
VII.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25
VIII. 관계 법령 등	30

붙임 전·편입학 관련 각종 서식

2024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요약)

1. 적용기간: 2024. 3. 1. ~ 2025. 2. 28.

2. 기본방침

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배정 취소된 자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상 경과후 전입학 신청 가능함
전학 후 직전 학교군 거주지로 이전한 자	전학 후 거주기간과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미만에 직전 학교군 거주지로 이전 시 원 재적교 배정함
거주지 학교군 외 다른 학군 배정받은 자	거주지 학교군 및 배정받은 학교가 속한 학교군 내에서는 전입학 허용하지 않음
전·편입학 허용 기한	동일 계열은 3학년 1학기, 다른 계열은 2학년 1학기 까지 허용함
일반고 전학 미허용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학교장선발 후기고 (한국삼육고, 한광고)에서 일반고 전학 허용하지 않음

3. 주요 변경사항

- <수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2023. 9. 27.)에 따라 2024. 3. 28.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이관(학교→교육지원청) 내용 반영
- <수정>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전학 시 6가지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를 ‘2024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 배정 시행계획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하게 수정
- <추가> 2023. 9.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진로변경 전입학(특성화고→일반고) 전학 신청 시 자격 요건에 재학 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추가
- <추가> 진로변경 전입학(특성화고→일반고) 시 전학 이후 원 재적교의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확정된 경우 원 재적교로 환원하는 내용 추가
- <추가> 전입학 배정원서에 전·편입학에 따른 교육과정 차이 불이익 감수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 추가

2024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I 목적

-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II 기본 방침

1. 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전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재학기간 중 방학이 있는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90일로 계산
2. **전학 후** 거주기간과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미만에 직전 학교군의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전 재적교로 배정한다.
※ 재학기간 중 방학이 있는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90일로 계산
3. 일반고등학교 진학 시 거주지 학교군 외의 다른 학교군에 배정받은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학교군 및 배정받은 학교가 속한 학교군 내에서는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4. 계열을 달리하는 전·편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 허용하고, 동일 계열로의 전·편입학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한다.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장 선발 후기일반고등학교(한국삼육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1 대상자

① 거주지 이전 학생 (직계가족 단독세대 구성)

1. 서울시 소재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2. 거주지 학교군 외의 다른 학교군에 배정받은 경우, 학생의 거주지 학교군과 현재 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이 아닌 제3의 다른 학교군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3.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서울시로 이전된 자

* 일반고 주간부(종합고 보통과, 특수지 고교 포함)

4.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서울시로 이전된 자 중 본인이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종합고 전문과, 대안교육 특성화고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

❖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①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
-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③ 부모가 이혼한 경우
- ④ 부모가 사망한 경우
- ⑤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⑥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⑦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⑧ 미혼부 또는 미혼모

②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학교장 추천 등)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아 교육장(학교장)이 전학을 조치(요청)한 학생
2.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학생
3.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학생
4. 학교군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리상, 교통여건상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학생
5.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조치한 학생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4. 3. 28.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이관(학교 → 교육지원청)

6.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학생 (공익제보위원회의 전학 권고조치 필수)

③ 교육과정(계열) 등 변경 희망 학생

1. 소속 학교*장의 전출 동의를 받아 전학을 희망하는 자

* 서울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 국제고), 영재학교, 자사고, 학력인정 대안학교(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여명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지구촌학교)

※ 영재학교에서 일반고로의 전학은 교육청에서 배정하지 않으며, 학교간 승인으로 가능

2. 예술·체육, 과학, 교과 **중점학교***의 과정 이수를 원하지 않아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전학을 희망하는 자

* 서울 소재 중점학교

- 예술·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대원여고, 영신여고, 송곡여고, 송곡고)
- 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강일고 등 서울 소재 22교)
- 교과중점과정 운영학교(동성고, 송문고)

3. 영광고 관악예술과에 재학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전학을 희망하는 자
4. 서울미술고(전기 일반고)에 재학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전학을 희망하는 자

④ 체육특기자 학생

후기 일반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로 배정을 받고 활동 중인 자로 진로 문제(포지션, 체급, 세부종목 중복 등)으로 인하여 학부모가 요구하고, 학교장이 전입학을 추천 요청한 학생

- ※ 일반고 및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체육특기자가 다른 일반고로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부서로부터 협조 의뢰받아 시행함
- ※ 체육특기 포기자는 체육특기자 포기 관련 결재 문서(공문 또는 내부결재문)와 함께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일반고로 전학 가능

⑤ 지체장애 학생

지체장애 학생으로서 통학 여건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학생

⑥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1. 귀국 학생: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서 고등학교 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 학생

- 특례귀국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3호 해당자)
- 일반귀국자(위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

※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함

2. 다문화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②항에 해당하는 자

⑦ 학교 중도탈락자(자퇴·퇴학생)

1. 일반고등학교(주간부),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 국제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 타·시도 자율형 공립고 포함

2. 일반고등학교(야간부) 학업중단자 중 야간부 폐교로 재입학을 할 수 없는 학생

- ❖ **동일 계열:** 3학년 1학기까지 허용 (일반고·자사고·중점학교 → 일반고)
- ❖ **다른 계열:** 2학년 1학기까지 허용 (특목고·특성화고·학력인정대안학교 → 일반고)
 - ※ 1학기 기준: 8. 31.까지 배정
 - ※ 2024학년도 전·편입학 신청기한: 2025. 2. 4.(화)까지 배정

① 전입학

1. 계열을 달리하는 전·편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 허용하고, 동일 계열로의 전·편입학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
 - 다만, 영재학교에서 일반고로의 전학시기는 학교간 승인에 따라 허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제보자녀 피해학생,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시에는 계열 및 시기 제한 없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전학은 시기 제한 없음
 - 일반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한광고, 한국삼육고)로의 전학 시기는 해당학교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2.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체육특기 포기자가 일반고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별도 기간 없이 2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
3. 체육특기자로 계열을 달리하여 전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 (운동부 중도 해체 등)는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
4. 수업일수 합산 시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전입학이 불가능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② 재입학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할 희망할 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음

③ 편입학

자퇴·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편입학하되, 그 시기는 학년도 시작 일부터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퇴·퇴학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함

※ 동일 계열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하고, 다른 계열은 2학년 1학기까지 허용

3 배정방법 및 정원

① 배정방법

1. **일반 학생:** 학교군별, 학교별, 학년별, 남녀별로 결원수 범위 내에서 학생의 통학 여건(근거리,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 중에서 수시 배정한다.
2. **체육특기자:**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특례 입학한 학생선수로서, 요청교(후기 일반고)에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로 구비 서류 제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협조 요청에 의거 요청교(후기 일반고)에 배정한다.
3. **지체장애 학생:** 거주지 학군 내 인근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4.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학생(귀국 학생 등)은 교육청에서 배정하지 않으며 거주지 학교군에 있는 학교로 전·편입학 신청한다.

※ 학교장은 학업성취 수준, 이수과목 차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문화학생 등의 전·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음

5. 학교 중도탈락자(자퇴·퇴학생): 원칙적으로 원적교에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①학생이 원적교 재입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다른 학교 편입학을 요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다른 학교 편입학을 요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한다.

※ 일반계열 이외의 학교에서 중도탈락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장은 동일 계열의 다른 학교의 장이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6.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학교장 추천 등)

(원칙) 거주지 이전 없이 동일 학교군의 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학생)
 - 거주지와 상관없이 비공개 배정하며(비밀 전학),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계열 구분 없이 정원 외로 배정할 수 있다.
 - ※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음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거주지 학교군 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다른 학교군으로 배정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 재적학교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배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둔다. 다만, 학교의 결원현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 군에 관계없이 배정한다.
 - 재적학교 환원 금지(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적용)
 - 법률상의 조치이므로 가해학생 측의 동의, 서류제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적 이동할 수 있다.
 - 배정받은 학교에 피해학생이 재학중인 경우, 재배정 또는 등록 취소

○ (교육활동 침해 학생)

- 재적학교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배정하여 피해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둔다. 다만, 학교의 결원현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 군에 관계없이 배정한다.
- 재적학교 환원 금지(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적용)
- 배정받은 학교에 피해교원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재배정 또는 등록 취소

② 정원

○ 전·편입학 정원 내 및 정원 외 허용 기준

구분	정원 내	정원 외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 이내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	제한 없음
일반고	일반학생, 체육특기자, 일반귀국자	일반학생, 체육특기자, 일반귀국자	특례귀국자, 군인자녀	보훈자 자녀	지체장애, 가정폭력 피해학생, 아동학대 피해학생, 성폭력 피해학생

※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 결원이 있을 경우 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 대상자를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도 허용 가능

4 등록 기한

1. 전입학교를 배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배정학교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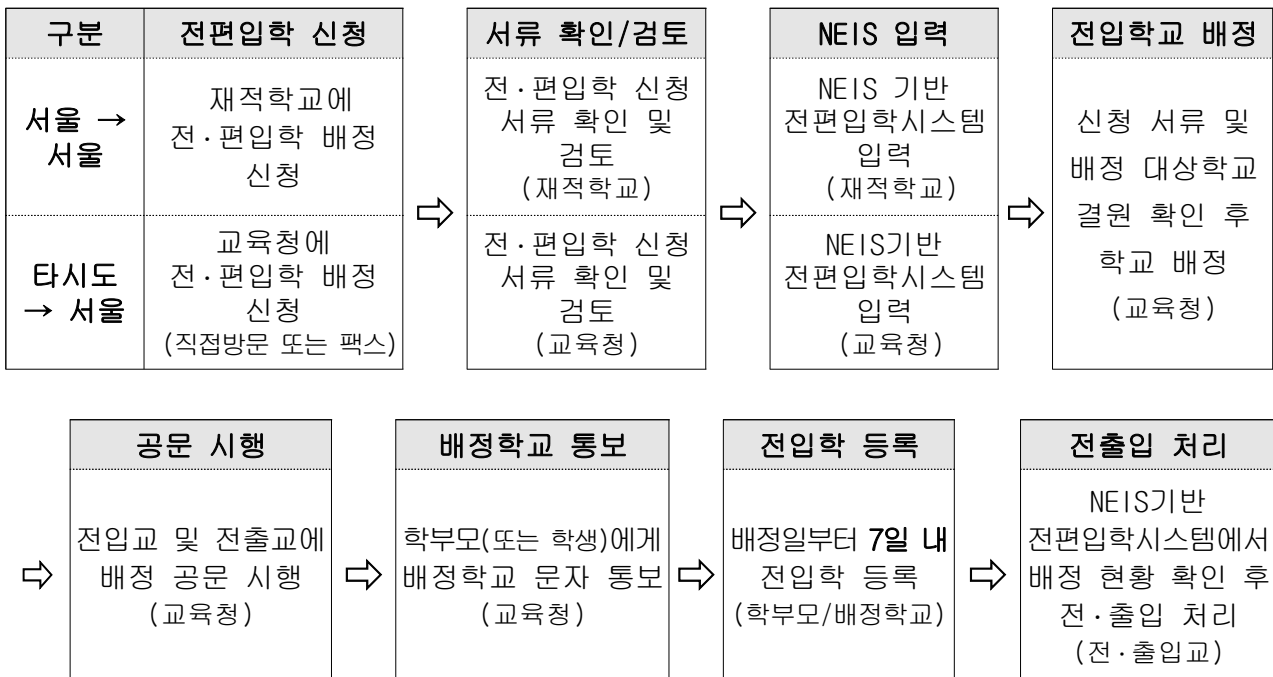
- 배정 후에는 학교 변경 불가
- 등록 기간(7일) 내 ‘등록포기’ 하거나 ‘미등록’ 한 경우 배정을 취소하고 원 재적학교로 환원 조치 함

※ 전입, 전출교의 시험, 방학 등 학사일정으로 인해 등록 기간(7일) 내 배정처리 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간 협의하여 등록 기간(7일) 이후 배정 처리가 가능하며, 이 사실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함

2.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학의 경우 전입학교를 배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하지 않아도 원 재적학교에서 배정된 학교로 학적을 바로 이동함

❖ **7일 산정 방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처리기간 계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시) 2024. 3. 7.(목) 배정 시, 3. 15.(금)까지 등록 (3. 7. 포함, 토·일 제외)

5 전·편입학 처리 절차



※ 전·편입학 배정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받아 사용 (메인 → [교육정보](#) → 전편입학안내)

6 유의 사항

1. 가거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한다.

- 전입 학교장은 배정 받은 학생에 대한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가거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배정 취소를 의뢰

- 각급 학교에서는 전·편입학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별척사항을 안내하여 위장 전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 전입학교에서 가거주 및 미등록 등으로 배정취소 시 증빙서류(배정 취소 사유서[서식 7])를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나이스를 통해 신청
 - ※ 나이스(NEIS)시스템을 통한 배정취소요청 시 취소요청 비고란에 결재 관련 대호 기재
- 학생이 동일 학교에 가거주 및 미등록 등으로 2회 배정취소된 경우 3번째 신청시 동일 학교 신청 불가

❖ 거주 사실 판단 기준

1.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실 거주로 간주

- 가.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하여 부 또는 모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방이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2. 가거주의 판단 ⇒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나.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다.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 1의‘다’항 해당자 제외)
- 라. 친척(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 1의‘나’항 해당자 제외)
-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별척사항 안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주지 조사시 학교에서는 가급적 2명 이상 조사 인원을 구성하여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련: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등학교의 거주지 조사 매뉴얼 안내(총무과-45241, 2018. 12. 05.)

< 거주지 조사 매뉴얼 (2018.12월 발행) >



- 전학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 전출학교 절차
 - 전입학 상담시 상황별 상담요령
 - 전 가족 이전 여부 확인
 - 거주지 조사 사전 안내(거주지 조사 동의서 징구)
- 전입학교 절차
 - 거주지 조사 여부 결정
 - 조사 인원 구성(가급적 2명 이상)
 - 거주지 조사 일정 안내, 조사 실시
 - 조사 결과 작성 및 보고
- 가거주 판단 사례

3. 제출된 서류에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한다.
4.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에 전학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전·편입학 규정에 따른 전학 배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편입학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6. 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자(재배정 포함)는 재학기간(방학 기간 제외)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전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7. 전·편입학 후 학교 전입일을 기준으로 등본상 주소지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미만인 직전 학교군의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전 재적교로 배정한다.

❖ 거주기간: 학교 전입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실거주가 공백 없이 연속된 기간

※ (예시) 등본상 주소지 전입일이 2024. 3.15.이고, 학교 전입일이 2024. 3.20.인 경우 거주기간 3개월은 학교 전입일인 2024. 3.20.부터 산정하여야 함(이 경우 3개월 도래 시점은 2024. 6.20.임)

8. 일반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선발교(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중점학교로 전·편입학 후 재학 기간(방학 기간 제외) 3개월 미만에 전 학교가 속한 일반학교군 내로 다시 전·편입 시 전 재적 고등학교로 배정한다.

9.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 전 배정으로 타 학교군(타 시도 포함)으로 배정받은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미만에 직전 학교군의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전 배정교로 배정한다.
10.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고입배정에 탈락하여 타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 후 다시 서울시 소재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후에 배정한다.
11.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타 시·도 전국모집단위 학교(영재학교 제외)에 입학 후 다시 서울시 소재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후에 배정한다.
12.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타 시·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 후 다시 서울시 소재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후에 배정한다.
13.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재학생이 타 시·도 고등학교(모든 계열) 전학 후 다시 서울시 내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학교 전입일을 기준으로 등본상 주소지에서의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후에 배정한다.
14. 서울시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신입학 후 서울시 소재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1개월 이후에 배정한다.
15. 중점학급 운영학교의 중점학급으로 배정 또는 선발된 학생이 중점과정 이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거주지 학교군의 다른 학교로 전학은 가능하나 중점학급 운영학교 내에서 교육

과정 변경(중점학급→일반학급)은 불가하다.

1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한국삼육고, 한광고)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17. 동작구 동작동, 흑석동, 사당동 전입 여학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강남서초 학교군 내 동덕여고, 서문여고에 배정한다.
다만, 강남서초 학교군에서 동작구로 이전하는 여학생은 제외한다.
18. 학생의 친족(4촌 이내)이 동일한 학교 또는 학교법인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학생이 타 학교 전학을 희망할 때에는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19. 다음에 속하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둔다.
 - 뉴타운, 재개발단지, 택지개발지구 등에 입주하는 학생은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하는 거주지 학교군 외에 인접한 학교군내 소속 학교 중에서 결원이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생생활규정」 등에 의한 각종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징계가 완료(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등 징계 이행)된 이후 전학 신청이 가능하다.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전학은 제한한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전학 등 가해학생의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7 구비 서류

2005. 12월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전학 담당자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청구

1 일반 학생

1. 공통 제출 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 (서식 1-1 또는 1-2)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전 가족 등재, 직계가족 단독세대 구성)
-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변동내용 등재된 것)
- 거주지 조사 동의서 (서식 2-1 또는 2-2)
- ※ 전·편입학업무 담당자가 해당 사항 확인

2.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서류

①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서울 외 다른 지역 에 되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이전할 수 없는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 이전할 수 없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주소지 (근무지)가 타 시·도(서울 이외의 지역)이어야 함.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 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 학생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모가 이혼 한 경우(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등] (친권자 기재된 것)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친권자 전학 동의서」(서식 3)를 추가 첨부 (친권자 동의내용, 친권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④ 부모가 사망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전학 신청일 기준 남은 전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함)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등학교 입학일 이전부터 별거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부터 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거주 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거주 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 [학부모 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⑦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 입소증]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학생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기본 증명서] 	
⑧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상기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학교장 추천자 등

1. 공통 제출 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서식 1-1)
- 학교장 추천(확인)서(서식 4) (담임교사가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조사 동의서 및 거주지 이전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현 재적교 재학 중 거주지 변동 있는 경우)

2.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 | |
|--|
| ① (비밀전학)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 다음 중 하나만 제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 가족구성원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p>② (비밀전학) 성폭력 피해학생(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p> <p>- 다음 중 하나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통합(2015.1.1.) ○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 가족구성원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p>③ (비밀전학)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학생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제보위원회 [전학 권고조치 확인 공문] ※ 구비절차: 전학권고조치 확인 요청(학교) → 서울시교육청(감사관) → 확인 공문시행(감사관) → 학교
<p>④ (비밀전학)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교육장(학교장)이 요청(추천)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 (교육장(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p>⑤ 심각한 질병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 전부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종합병원 진단서] ○ 3개월 이상의 [병원 진료 확인서] ○ 3개월 이상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상담지도록 사본] ※ 재적 학교장은 전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p>⑥ 통학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학군 내 거주지 이전으로 통학 여건이 어려운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 여건이 포함된 [담임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 날인 (서식 6) -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10km 내외 또는 1시간 이상 소요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한 통학 거리 및 시간 참고

※ 비밀전학, 강제전학 신청시 총무과로 공문 시행(보안문서, 비공개로 작성) 후 나이스로 전학 신청

※ 상기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배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재적·배정학교장은 수용해야 한다.

③ 법률에 따른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1. 공통 제출 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서식 1-1)
- 학교장 추천(확인)서(서식 4) (담임교사가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 날인)

2.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①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한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 (교육장(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전학 조치한 경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사본] (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4. 3. 28.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이관(학교 → 교육지원청)

3. 유의사항

- 법률에 따른 전학 조치는 교육감이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학생을 배정한다.
- 배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재적·배정학교장은 수용해야 한다.

④ 교육과정(계열) 등 변경 희망자 (3페이지 대상자 ③에 해당하는 학생)

1. 전입학 배정원서(서식 1-1)
2. 학교장 추천(확인)서(서식 4) (담임교사가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 날인)
3.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4. 거주지 조사 동의서 및 거주지 이전 시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재적교 재학 중 거주지 변동있는 경우)

⑤ 체육특기자

1. 전입학 배정원서(서식 1-1)
2. 학교장 전출(이적)동의서

3. 체육특기자 배정명단 사본 (또는 체육특기자 증명서 사본)
4. 학생·학부모 동의서
5. 선수등록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7. 결원표(전입교)
8. 학생선수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전입교)

⑥ 지체장애 학생

1. 전입학 배정원서(서식 1-1)
2.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3.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 후 원본대조필) 또는
근거리 통학 대상자 확인서

⑦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 귀국 학생: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참조
- 다문화학생: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및 다문화 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자료 참조

⑧ 학교 중도탈락자 (자퇴·퇴학생)

1. 재입학: 재입학원서(해당학교 소정 서식)
2. 편입학
 - 편입학 배정원서(서식 8-1 또는 8-2)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 거주지 조사 동의서 및 거주지 이전 시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재적교 재학 이후 거주지 변동 있는 경우)

9] 군인자녀

- 공통서류, 전학 사유에 따른 추가서류 및 부 또는 모의 군복무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구비서류 요약 (△: 재적교 재학 중 거주지 변동있는 경우 제출)

유형 서류	일반학생 (거주지 이전)	학교장 추천	교육과정 (계열) 등 변경	체육특기자	체육특기 포기	지체장애	학교 중도 탈락자
전·편입학 배정원서	○	○	○	○	○	○	○
거주지 조사동의서	○	△	△	-	△	△	△
등·초본	○	○	○	○	○	○	○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서류	○	△	△	-	△	△	△
학교장 추천서	-	○	○	-	-	○	-
기타	-	학교장 추천 유형별 추가서류	-	체건과 공문	체육특기자 포기 공문	-	-

1 목적

소질·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계열을 변경할 수 있는 전입학 기회 제공

2 전입학 절차

①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고 포함) → 일반고 전학

1. 대상: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포함) 1~2학년 학생
2. 시기: 1학년은 2학기(8~9월중), 2학년은 1학기(3월중) 중 별도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함
3. 전학 신청 기준(자격)
 - 서울시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번	요건	적용 기준
1	미인정결석 3일 이하인 자 (미인정조퇴·미인정지각·미인정결과는 3회당 미인정결석 1일 간주)	직전 학기 (1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2학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호(사회봉사)부터 제9호(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재학 전체 기간
3	학생생활규정(학교선도규정)에 따른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없는 자	직전 학기 (1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2학기)
4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제2호(사회봉사)부터 제7호(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2024학년도 1학년 진로변경 전입학부터 적용	재학 전체 기간

※ 자격요건이 미충족된 학생을 추천해서 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 조치함

※ 일반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선발교(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중점학교로 전·편입학 후 재학 기간(방학 기간 제외) 3개월 미만에 전 학교가 속한 일반학교군 내로 다시 전·편입 시 전 재적 고등학교로 배정함.

※ 전학 이후 원 재적교에서의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확정된 경우, 배정을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 조치함

※ 학교장 추천 시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기준 적용[총무과-74630(2019.12.24.)]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준에 반한 학교장 추천기준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움

4. 신청 및 배정방법

- (학교) 전입학 신청: NEIS기반 전·편입학 시스템으로 신청
- (교육청) 배정
 - 거주지 학교군 내 지망학교 중 결원을 고려하여 배정
 - 다만, 일부 학교에 지원자가 집중될 경우 분산하여 배정

2 일반고 → 특성화고 전학

❖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로 전·편입학 후 재학 기간(방학 기간 제외) 3개월 미만인 전 학교가 속한 일반학교군 내로 다시 전·편입 시 전 재적 고등학교로 배정한다.

1. 수시 전형: 2학년 1학기까지 수시로 신청

-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은 별도로 적용함
 -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하여 학교장이 시행하되, 선발형 학교에서는 신입생 전형요강에 준하여 실기고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타 시·도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종합고등학교 전문과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이 서울시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는 학교별 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전·편입학을 허용함
- 전입학 절차
 - 전입학 신청(특성화고에 개별신청) → 전입학 동의서 발급(특성화고) → 재적학교장의 허락 → 전출입 처리(전입·전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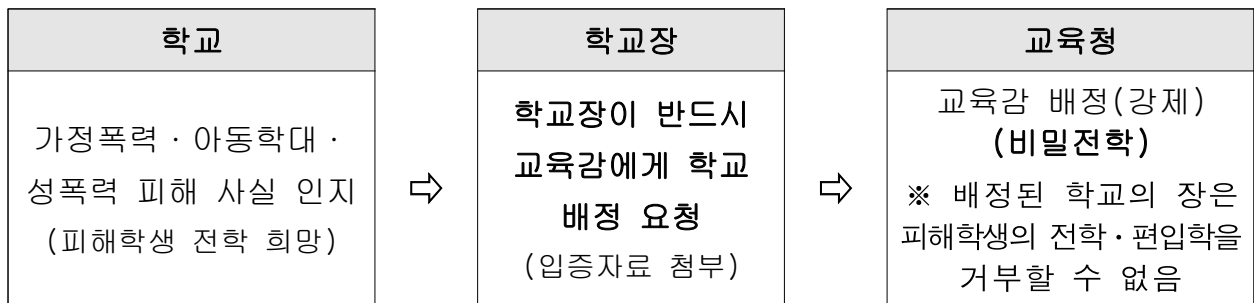
2. 정시 전형 -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일반고 → 특성화고)

- 대상: 일반고 1~2학년 학생

- 시기: 1학년은 2학기(8~9월중), 2학년은 1학기(3월중) 중 별도기간을 지정하여 허용
-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 선발 규정에 따라 학교별 심사를 거쳐 선발
- 전입학 절차
 - 진로변경 전입학 안내(교육청) → 전입학 신청(재적교) → 신청서류 접수 및 특성화고 배부(교육청) → 심의 및 선발 결정(특성화고) → 최종 선발 결과 통보(특성화고·교육청) → 전출입 처리(전입·전출교)
 - ※ 정시 전형 세부 계획은 별도 시행

V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학교장 선발교

1. 대상: 학교장 선발교(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에 재학 중인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 학생
2. 전학 절차



3. 전학 신청 방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공문 신청(총무과)
4. 구비 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
 - 학교장 추천(확인)서
 - 피해 입증 자료 (p.13~14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참고)

1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편입학

-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은 별도로 적용함
 -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하여 학교장이 시행함
 - 학교별 전형기준에 모집인원, 지원자격, 절차, 선정방법(공개추첨) 등을 정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거 시행함
 - 일반고등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편입학 후 재학 기간(방학 기간 제외) **3개월 미만**에 전 학교가 속한 일반학교군 내로 다시 전·편입 시 전 재적 고등학교로 배정함
- ※ 다만, 자사고로의 수시 전·편입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사고 학교장은 전·편입학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전입학 절차
 - 전입학 신청 → 전입학 동의서 발급(자사고) → 재적학교장의 허락 → 전출입 처리(전입·전출교)

2 예술·체육, 과학, 교과 중점학교로의 전·편입학

-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은 별도로 적용함
 -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중점과정 선정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시행함
- 전입학 절차
 - 전입학 신청 → 전입학 동의서 발급(예술·체육, 과학 중점학급 및 교과 중점과정 운영학교) → 재적학교장의 허락 → 전출입 처리(전입·전출교)

3

특목고, 영광고(관악예술과)로의 전·편입학

-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은 별도로 적용함
 -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하여 학교장이 시행하되, 선발형 학교에서는 신입생 전형 요강에 준하여 실기고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전입학 절차
 - 전입학 신청 → 전입학 동의서 발급(해당학교) → 재적학교장의 허락 → 전출입 처리(전입·전출교)

4

서울 소재 학력인정 대안학교로의 전·편입학

-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은 별도로 적용함
 -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하여 학교장이 시행하되, 선발형 학교에서는 신입생 전형 요강에 준하여 실기고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전입학 절차
 - 전입학 신청 → 전입학 동의서 발급(해당학교) → 재적학교장의 허락 → 전출입 처리(전입·전출교)

1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관련 절차 가이드라인 참조
(교육부, 학교운영지원과-2928, 2010. 5. 14)

2 입학 대상

1.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2.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학력미인정 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외국인 학교 등)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 다만, 학원 등 사교육 관련 기관에서 이수한 학습 경험은 제외
 - ※ 1년 3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기간은 1년 단위의 3학기 과정을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까지만 이수한 경우는 1학기 과정만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학교외 학습 경험의 1학기 과정은 매년 3월초에서 8월말까지, 9월 초에서 익년 2월말까지의 학습 경험으로 한다.

3 입학시기 및 자격요건

1. 신청 시기: 매학기 일정 기간
 - (원서 접수) 학기 시작 전 10일에서 시작 후 10일 이내 학교별로 정함
 - (서류심사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원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2. 입학 신청 자격: 전 가족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학교외 학습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외 학습 경험이 2학기(1년) 이상인 자
 - ※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외 학습경험이 1학기인 자는 2학년 1학기로 입학신청이 불가함
 - (2학년 2학기로 입학 신청) 학교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고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외 학습 경험이 2학기(1년) 이상인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외 학습경험이 3학기(1년1학기) 이상인 자
 - (3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학교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 2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고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외 학습 경험이 2학기(1년) 이상인 자
 - 고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외 학습 경험이 3학기(1년1학기) 이상인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외 학습 경험이 4학기(2년) 이상인 자
 - ※ 3학년 2학기로 입학은 「서울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 계획」에 의거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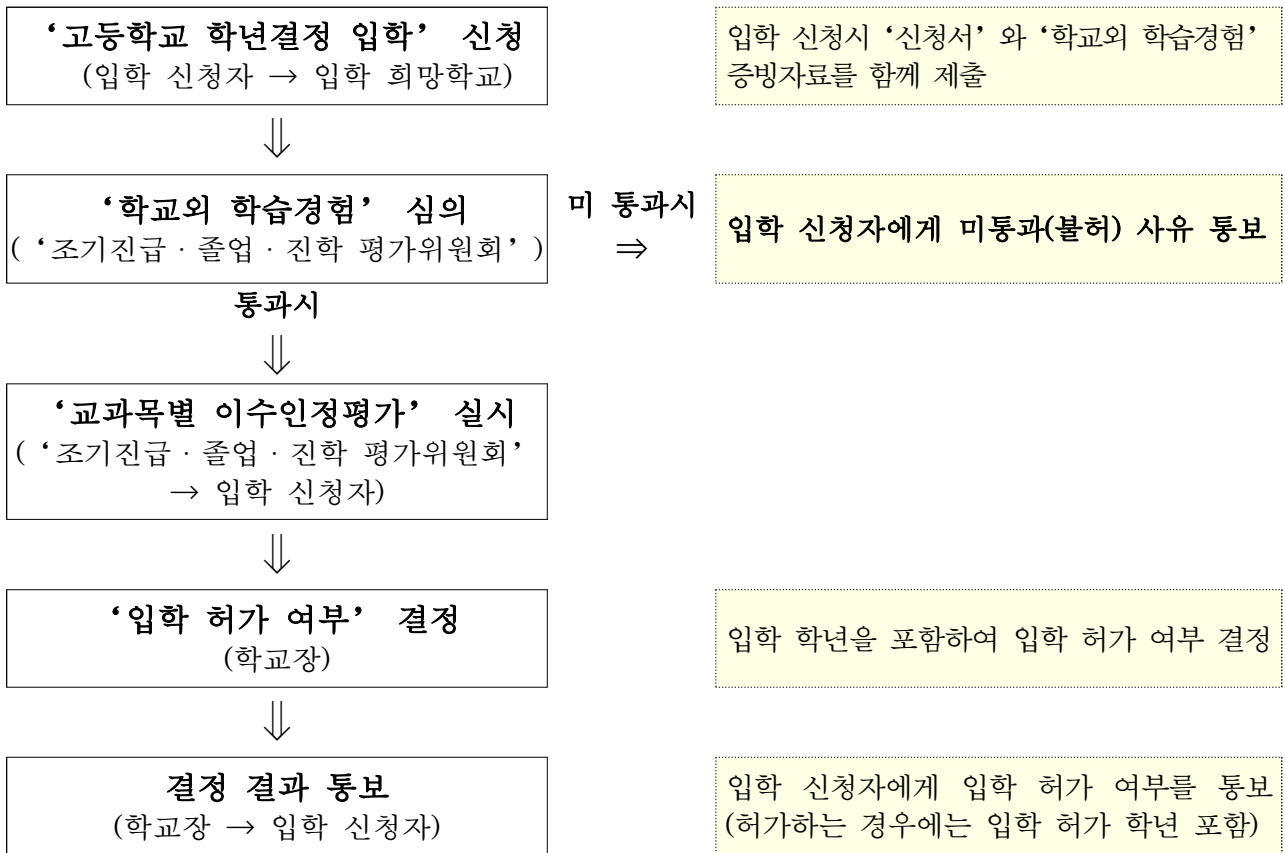
4 입학 원칙

1. 입학 학생 수 허용 범위는 학교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한다.
 - (일반고) 학교별로 해당학년의 일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학년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용한다.
 -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서울미술고, 기타고) 학교별 해당학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2. 신청학생의 학년결정 입학은 원적교와 계열이 다르면 2학년 1학기까지, 동일계열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한다.
3.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 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은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NEIS 학적처리 포함)

5 입학 절차

1. 입학 신청자는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학기 시작 전 10일에서 시작 후 10일까지 「학년결정 입학신청서」와 「학교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입학 신청서는 해당학교에서 제공)
 - ※ 입학신청 희망학교가 전기고일 경우 서울시 전역, 후기일반고의 경우는 거주지 학교군내 근거리 학교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외 학습 경험」을 심의한다. (미 통과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
3.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입학 신청자에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한다.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입학 신청자에게(허가하는 경우 허가 학년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 ※ 학년결정 입학 절차를 참고하되, 일정은 학교별 실정에 맞추어 추진 가능

❖ 학년결정 입학 절차 (예시)



6 학교외 학습경험 기준

1.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습은 학기 평균 11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
2. 학기당 11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심의 기준 근거

- 학기 평균 11주
 - 171일(정규학교 연간 최소 수업일수) × 2/3(정규학교 학년수료 기준) = 114일
 - 114일 ÷ 5일(주당 수업일) = 22.8주(연간, 학기당 11.4주)
- 주 평균 20시수
 - 30시수(고등학교 주당 일반교과 수업시수) × 2/3(비정규 교육시설 감안) = 20시수

❖ **학교규칙(수업일수) 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 까지 관할교육청에 보고한다.

- 3. 「학교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활용한다.
- 4.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 및 불합격 기준 등을 신청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여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 알리미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그 외, 입학 신청 이후 정원 변동 등 학생·학부모가 궁금해하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입학 신청 시까지 사전 안내한다.

7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계획 알림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57706, 2010.11.19.)

-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평가(지필평가, 관찰·면담 평가일 경우는 기록한 회의록 등이 있어야 함)를 실시한다. 다만,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대체 가능하며, 사회 또는 과학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 신청자에게 선택 기회를 부여한다.
- 2.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 학교 정기고사에 준한다.
-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기준, 불합격 기준 등은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4. 심의 및 평가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준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입학자격 등)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학력인정)
-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제5조(입학과정과 절차)
- 민법 제909조(친권자) 및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가족의 취학 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가족의 취학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학)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지원)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공익 제보자의 보호 등), 제13조(구조금 등 지원)
-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 운영계획(진로직업교육과-9525, 2015.8.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교육부)
-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자료(교육부)
- 서울 학교 운동부 운영 매뉴얼(체육건강문화예술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취학시킴 의무)**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전학)**

붙임 전·편입학 관련 각종 서식

- [서식 1-1] **2024학년도** 후기일반고 전입학 배정원서(서울시내용)
- [서식 1-2] **2024학년도** 후기일반고 전입학 배정원서(타 시도 → 서울 전입용)
- [서식 2-1] 거주지 조사 동의서(서울시내용)
- [서식 2-2] 거주지 조사 동의서(타 시도 → 서울 전입용)
- [서식 3] 친권자 전학동의서
- [서식 4] 학교장 추천(확인)서(학교작성용)
- [서식 5] 학부모 확인서
- [서식 6] 담임 확인서(학교장추천자)
- [서식 7] 배정 취소 사유서
- [서식 8-1] **2024학년도** 후기일반고 편입학 배정원서(서울시내용)
- [서식 8-2] **2024학년도** 후기일반고 편입학 배정원서(타 시도 → 서울 전입용)
- [서식 9] 재입학원서
- [서식 10]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 *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작성
- * 전입학 배정원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

거주지 조사 동의서

- 성명 : (학년 반)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재적학교 : 고등학교
- 구 거주지 주소 :
- 신 거주지 주소 :

위 학생과 전 가족은 거주지 이전 및 전입신고를 완료 하였으며, 전입학 배정 후 전입학교의 거주지 조사에 동의 합니다.

또한 가거주로 배정이 취소되는 경우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전입학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작성
- * 전입학 배정원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

거주지 조사 동의서

- 성명 : (학년 반)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재적학교 : 고등학교
- 구 거주지 주소 :
- 신 거주지 주소 :

위 학생과 전 가족은 거주지 이전 및 전입신고를 완료 하였으며, 전입학 배정 후 전입학교의 거주지 조사에 동의 합니다.

또한 가거주로 배정이 취소되는 경우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전입학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담임교사가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 날인(필수)

학교장 추천(확인)서

성 명 : (학년 반)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학생은 ~~~

년 월 일

작성자 : 담임교사

날인(서명)

()고등학교장 [직인]

[서식6] 담임확인서

- * 학교장추천 대상자 유형 중 학교군 내 거주지이전으로 통학이 어려운 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작성
- * 학교장 직인날인필수

담임 확인서

(일반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

성 명 : (학년 반)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학생은 ~~~

통학 방법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도보, 기타)에 따른
	출발지() 목적지()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교통수단별 환승 횟수 등 구체적으로 작성
	총 소요 시간

년 월 일

작성자 : 담임교사 (서명)

()고등학교장 [직인]

* 배정 취소 사유(가거주, 등록포기, 미등록)가 발생한 경우 작성 후 내부 결재 실시

배정 취소 사유서

- 성명 : (학년 반)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배정학교 : 고등학교
- 주소 :
- 배정 취소 사유 : 가거주 등록포기 미등록
(해당 사유에 표시)

위 학생은 상기 사유로 인한 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배정 취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배정 취소 시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전입학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편입학 학생은 제한 기간없이 신청 가능)

년 월 일

담당자 : 날인(서명)

()고등학교장 [직인]

2024학년도 후기일반고등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서울시내용)

* 신청: 민원인이 학업중단 당시 학교 전출입 담당자에게 신청 → 담당자가 구비서류 확인 후 NEIS전·편입학 배정시스템에 입력 후 전송
 * 편입학은 다음 학년도로 자퇴·퇴학 당시의 학년도로 편입학하되, 그 시기는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① 지원자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성별	학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출신중학교	(시/도)		(시/군/구)	중학교	거주지 학군내 후기일반고	1지망									
	전(前) 재적교			전전(前前) 재적교			2지망									
	자퇴(퇴학) 연월일			년	월	일	3지망									
②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이메일								
	휴대폰번호			(도로명)주소												
③ 재적 증명	※ 학교전출입 담당자는 재적증명란을 작성 후 전편입학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나이스 전편입학배정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지원자는 20년 월 일 본교에 (<input type="checkbox"/> 입학, <input type="checkbox"/> 전입학, <input type="checkbox"/> 편입학, <input type="checkbox"/> 재입학) 하여 20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반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학 교 명				연락처			FAX								
	주 소				학 교 유 형	<input type="checkbox"/> 일반고등학교 주간부 <input type="checkbox"/>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input type="checkbox"/> 특수목적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자율형공·사립고										
	위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 ③번 학교 전출 담당자가 기재 및 확인 작성 *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유의사항 안내 > ※ 전·편입학 배정 후에는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니 학교 선택 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의 흠이 발견된 때에는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의3에 따라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원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확인 및 서명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주민등록등본, 과거의 주소변동 이력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이 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입학 담당자가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입학 학교 배정이 보류 및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정원서 제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가. 전(편)입학 학교 배정으로 인한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음을 감수하겠습니다.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60%;"></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60%;">○학 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 또는 서명)</td> </tr> <tr> <td style="width: 60%;">○보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 또는 서명)</td> </tr> </table>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전(편)입학 학교 배정 -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학생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출신중학교, 재적학교, 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연락처 등 배정원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 보유기간: 5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편)입학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또는 서명)	○보호자:
	년	월	일													
○학 생: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